

학술지 연구윤리규정

2024. 4. 17 제정
2025. 12. 15 개정
2026. 6. 1 개정

〈연구2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관세무역연구』(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필요한 연구윤리의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절차와 조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술지 발간과 관련하여 논문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에게 적용되며 기타 논문투고를 희망하는 연구자에게도 준용한다. 학술지의 발간과 관련된 부정행위에 관한 제반 사항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연구윤리규정 준수 의무)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논문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심사 및 논문관리의 공정성

제4조(심사자의 책임과 의무) ① 심사자는 학술지의 편집위원장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심사 평가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③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제5조(심사과정의 비윤리적 행위) ① 심사자는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자가 직간접으로 관련 된 연구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1. 자신이 의뢰 받은 논문심사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2.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을 학과나 학회 동료들과 논의하는 행위
3. 심사종료 후 심사물의 사본을 분쇄하지 않고 이를 보유하는 행위
4.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명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5.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평가하는 행위

제6조(이해상충) ① 논문투고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은 논문 투고·심사·편집 과정에 있어 사적 상충을 포함해 사회 통념상의 이해 상충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그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전항 보고에 대해 이해상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논문의 투고·심사·편집을 제한하거나 회피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의2(동일 기관 심사자 제척)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심사를 의뢰하지 않는다.

② 전항에서 말하는 동일 기관의 범위는 대학의 경우 단과대학·학과, 연구기관·공공기관의 경우 동일 부서 단위로 본다.

제7조(지적 상충)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8조(심사위원의 책임과 의무) ①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능력을 지닌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9조(편집위원의 책임과 의무) ①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심사 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편집과정의 참여자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요청이

있으면 논문의 심사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 3 장 윤리규정 시행

제10조(윤리규정 준수) ①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규범(별표1)을 개발원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논문투고자에게 학술지의 연구윤리를 주지시켜야 한다.

② 논문투고자는 학술지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된 논문만을 투고해야 하며, 윤리규정 준수에 대한 자기 확인을 위해 연구윤리확인서(별지1)를 논문 투고 시 원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논문 접수 시 연구윤리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한 후, 미제출 시 이의 제출을 논문투고자에게 요구하거나 논문 접수를 거부하여야 한다.

③ 논문의 투고자는 논문 투고시 논문표절방지시스템(KCI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 <http://check.kci.go.kr> 등)을 활용하여 유사도 검사를 실시하는 등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윤리규정 위반 보고) 학술지에 대한 논문 투고와 편집, 심사 및 출판과 관련된 자가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윤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 4 장 윤리위원회

제12조(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0인 이내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두고 상시 운영한다.

② 윤리위원장은 개발원 회장이 위촉하고, 윤리위원 및 간사는 윤리위원장의 추천으로 개발원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윤리위원회 윤리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심의·의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독립성과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제13조(윤리위원회의 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행위 관련 제도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확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및 피조사자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6. 연구윤리규정 위반 여부 판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윤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5조(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5 장 연구부정행위 심의 및 처리

제16조(연구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및 처리) 제보자는 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윤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 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③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8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윤리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③ 피조사자는 윤리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고, 피조사자가 명예회복을 신청할 경우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윤리위원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20조(예비조사)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윤리위원장은 예비조사위원회를 5인 이내로 구성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② 예비조사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 후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되면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④ 위원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21조(본조사) ① 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완료된 후에 본조사를 실시한다.

② 윤리위원장은 본 조사위원회를 예비조사위원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연구 부정행위 여부의 판정을 결정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본 조사 판정이 완료되면 윤리위원장은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판정 결과를 통보한다.

⑤ 예비조사 착수 후 본조사의 판정 통보까지 모든 조사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윤리위원회는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윤리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하며 제보자는 조사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제2항의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기피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판정되면,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편집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주의 환기, 비공개 경고, 공개 경고, 시정 권고, 논문심사 배제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저자에 대해서는 판정된 때부터 3년간 본 학술지에 논문투고를 금지하고, 해당 논문은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며, 게재 취소 사실을 개발원 홈페이지와 다음 권(호)을 통하여 공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5조(특수관계인 공동저자 부정행위 방지 및 조치) ①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을 정당한 학술적 기여 없이 저자로

포함시키는 것을 금한다.

1.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

2.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4촌 이내 친족 포함)

② 특수관계인이 저자로 포함된 경우, 특수관계로 인한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특수관계인 논문 공저 신고서(별지2)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가 특수관계인 공동 저자와 관련한 연구부정행위를 확정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특수관계인 저자가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기관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이때 통보 절차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시행하며, 필요시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장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및 관리

제26조(생성형 AI 활용의 원칙) ① 논문투고자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또는 AI 보조 기술을 활용한 경우 해당 활용 사실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생성형 AI 활용 여부와 무관하게 논문의 정확성, 독창성 및 연구윤리 준수 여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 본인에게 있다.

③ 저자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검증을 위해 활용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27조(생성형 AI 활용의 공개) ① 연구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한 AI 도구 또는 서비스의 명칭 및 버전

2. AI 활용 내용 및 범위

3. AI 활용 이후 저자의 검토 및 수정 여부

② 생성형 AI 활용 사실은 논문의 방법론, 각주, 사사 또는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기타의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28조(생성형 AI 활용의 제한) ① 저자는 생성형 AI 활용 과정에서 표절, 허위정보, 편향된 내용, 저작권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논문에 포함된 이미지, 그림, 도표 및 시각자료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생성 또는 수정할 수 없다. 다만, 연구설계 또는 연구방법론의 일부로서 AI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자는 해당 활용 내용과 방법을 논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투고된 논문을 검토 또는 평가해서는 아니되며, 심사 및 편집과정에서 수집한 논문의 내용 또는 정보를 생성형 AI 서비스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생성형 AI 활용 원칙 위반 시 조치) ① 생성형 AI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기초로 편집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생성형 AI와 관련하여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항의 경중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생성형 AI 활용 사실 등에 관한 명시적 의무 이행 요구
2. 생성형 AI 활용 사실 미공개 또는 허위 기재에 대한 주의 환기 또는 경고
3. 생성형 AI 활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연구윤리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준하여 처리

부 칙

이 규정은 회장의 결재를 득하여 2024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회장의 결재를 득하여 2025년 12월 15일부터 소급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회장의 결재를 득하여 2026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제10조(윤리규정 준수) 관련

『관세무역연구』 연구윤리규범

(1) 연구의 진실성과 사회적 책임

1.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 및 평가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며,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3. 연구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모든 연구정보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5. 연구자는 적절한 연구방법과 통계기법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구자 상호관계의 공정성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3. 저자들은 자신의 기여도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4. 교신저자는 연구 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며, 저자표시에 대한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5. 저자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기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하며,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사를 표하는 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6. 저자 표시 순서는 모든 저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7. 논문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3) 연구부정행위 및 비윤리적 연구행위의 금지

1.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행위를 말한다.

연구부정행위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4	자기표절	자신의 논문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출처인용 없이 새로 출간하는 논문에 사용하는 행위
5	부당한 저자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6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7	조사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8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2. 연구부정행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규정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3. 저자가 논문 작성을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거나 참고문헌을 표기하는 경우 다음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수, 페이지, 출간연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한다.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으로 또는 논문의 게재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별지 1) 제10조(윤리규정 준수) 관련

『관세무역연구』 연구윤리확인서

본인은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발간하는 『관세무역연구』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며, 투고 논문과 관련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일체의 연구부정행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연구부정행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며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결정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구윤리 자가점검표〉

번호	항목	점검 사항	예	아니오
1	표절금지 및 저작권	투고 논문이 타인의 논문 표절 등으로 저작권 관련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자기표절한 사실이 없습니까?		
2	정보의 정당한 활용	연구 중 취득·활용한 정보가 부당하게 사용되었거나 누설 또는 조작·변조 등으로 예기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소지는 없습니까?		
3	이중 게재금지	투고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이중으로 게재 요청된 사실(심사요청, 심사 중, 게재확정 상태 등 포함)이 없습니까?		
4	기재사항 확인	논문제목, 성명, 주제어가 국문 및 영문으로 정확하게 표현되었으며, 목차와 초록(국문 또는 영문)이 제시되어 있습니까?		
5	투고요령 준수	각주, 참고문헌 등이 논문투고요령에 맞게 작성되었습니까?		
6	지원사항 표시	연구비 지원사실 등 표기사항이 필요한 경우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까?		
7	생성형 AI 활용 관련 사항	생성형 AI 활용 여부 및 범위를 적절히 공개하였으며, 논문의 모든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십니까?		

본인은 상기 사항이 틀림없이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성 명 (인)
소 속
직 위

2024년 00월 00일

『관세무역연구』 편집위원장 귀하

(별지 2) 제25조(특수관계인 공동저자 부정행위 방지 및 조치) 관련

특수관계인 논문 공저 신고서

논문 제목					
특수관계인 성명					
특수관계인 소속					
특수관계인 역할	제1저자 / 공동저자 / 교신저자				
특수관계인 유형	가족	해당사항 없음 / 배우자 / 자녀 / 4촌 이내 친족 등 기타(직접작성)			
	미성년자	해당사항 없음 / 지인 자녀 / 기타(직접 작성)			
특수관계인이 상기 논문의 저자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유					
연구추진 단계별 기여도(%)					
구분					합계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합계					100

상기 사항은 틀림없이 기재되었으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 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 행위 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성 명 (인)

소 속

직 위

2025년 00월 00일

『관세무역연구』 편집위원장 귀하